

OECD 뇌물방지협약과 프랑스 정책*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nd French Policy

안 상 옥(Sang Wuk AHN)**

ABSTRACT

On December 17, 1997, 28 OECD member-states and 4 observer countries (Argentina, Bulgaria, Chile, Slovakia, Brazil) signed a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agreed to introduce the inspection measure for this Convention.

On May 25, 1999, the French National law, which recognize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was adopted. On July 31, 2000, the measures for the execution of this OECD convention was proclaimed.

As a member-states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France is respecting its obligation in ratifying this Convention and introducing the national regulations for it.

However, compared to other countries, France has a problem of transparency of governance. We can find these examples from the Bribery cases in which French companies are involved. The reason of French problem of transparency is not originated from the lack of Anti-corruption measures but from the closed French Elite circle's governance. Based on Grandes Ecoles system, French Elite Circle harms the corruption inspection between French Elite circle member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Anti-bribery environment in France, the improvement of French Politic, Economic and Social governance is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introduction of legal measures for the Anti-corruption.

Key words: OECD, Anti-Bribery Convention, France, Anti-Corruption, Corruption Culture

I. 서론

28개 OECD 회원국 및 5개의 옵저버 국가(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칠레, 슬로바키아, 브라질)은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7년 12월17일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하고,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감시체제 도입에 합의하였다.

OECD가 뇌물방지협약을 채택한 배경에는 미국의 역할이 컸다. 미국 닉슨 대통령이 연루된 도청사건을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국기업이 외국공

* 본 논문은 2012년 행정학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제 12회의 7분과 한국부패학회 III패널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조교수

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포착되었고, 이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었다. 조사결과 미국 500대 기업 중 117개 기업을 포함한 400여 기업들의 외국공무원 상대 뇌물스캔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Nothrop 3,070만 달러, Exxon 5,670만 달러 등의 뇌물제공이 밝혀졌다. 게다가 일본의 다나카 수상이 미국 록히드 항공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뢰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미국 기업의 뇌물제공 문제는 국제문제로 비화되었다. 결국 미국기업의 해외 뇌물제공 사례가 미국의 대외정책에까지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미국에서 1977년 해외부패관행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이 제정되었다. 이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미국의 해외부패관행법에 따라서,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뇌물 제공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법률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도, 뇌물을 제공한 기업을 미국법에 의해 처벌하는 전 세계 부패방지를 위한 진일보한 입법이었다.

문제는 미국만의 입법조치였기 때문에, 미국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선진국 기업은 미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해외시장 진출에서 미국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부패문제에 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끊임없이 환기시켰다.

1976년 미국의 촉구에 따라, OECD는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 마련 등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제공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협약의 입안을 계속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다른 OECD 회원국들간의 견해차이가 계속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OECD 산하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 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에서 논의가 재개되었고, 그 결과 CIME산하에 ‘OECD 뇌물방지 작업반(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이 구성되었다.

1994년 5월 15일 “국제상거래 뇌물방지 OECD 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the OECD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를 채택하면서 OECD 차원의 본격적인 부패방지 노력이 시작되었다.

프랑스도 OECD 회원국으로서 뇌물방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내차원의 법 제정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청렴도의 측면에서 프랑스와 같은 선진 경제대국인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프랑스의 뇌물방지 협약 이행 조치의 현황과 프랑스 기업 및 정치권의 부패문제를 논의하여 프랑스 부패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OECD 뇌물방지협약

1977년 ‘해외부패관행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의 제정으로 미국기업들은 해외부패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외국기업들과의 국제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불만을 제기하였다.¹⁾ 이에 따라 미국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가 일종의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교역상대국들에게 뇌물공여행위를 근절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법률 제정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들은 해외부패방지에 관한 국내법 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미국은 개별 국가를 설득하는 전략에서 GATT, UN, OECD, IBRD 등의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협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해외부패방지법의 확산전략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국제기구로서는 OECD가 가장 빠르게 반응하였다. OECD에서 1994년 5월 15일 “국제상거래 뇌물방지 OECD 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the OECD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가 채택되면서 OECD 차원에서 회원국들의 부패방지 노력이 시작되었다.

1994년 OECD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원국들이 자국기업의 국제상거래에서 타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등의 방지를 권고한다.
- ② 외국 공무원의 법적 의무에 위반하는 일체의 금전적 혜택과 이권은 뇌물로 간주한다
- ③ 각 국가는 외국 공무원에 대하여 뇌물공여 금지를 위한 형법, 민법, 상법, 행정법, 조세법, 기업회계기준, 기타 관계법의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④ OECD 회원국가간에 국제간 정보교환, 증거제공, 범죄인도 등의 협력을 하고, 뇌물수수행위 등의 금지를 위한 새로운 협약과 제도를 마련한다.
- ⑤ 비회원국가와 다른 국제기구에 부패추방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구체적으로 ‘CIME’에게 이 권고안의 집행을 점검할 책임을 부여한다. 특히 ‘OECD 뇌물방지 작업반(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1994년 OECD 이사회 권고에 따라, CIME산하에 ‘OECD 뇌물방지 작업반(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은 OECD 회원국들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에 관련된 각국의 법률 규정과 그 규정의 이행상황, 부패방지를 위한 회원국의 활동을 조사하여, 1995년 6월 ‘국제상거래에 있

1) 미국은 1994년부터 1995까지 개발도상국가의 부패행위로 인해 개발도상국 정부조달 시장 접근에서 100여건, 금액으로는 약 450억 달러의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하였다.

어서 뇌물공여에 관한 권고에 대한 검토보고서(Review of the Recommendation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와 1996년 5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공여에 대한 권고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를 제출하였다.

1997년 5월에는 OECD 각료이사회에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에 관한 개정권고(Revised Recommendation on Combating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가 채택되었다. 이 개정권고안은 1994년의 이사회 권고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개정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공무원에 공여된 뇌물의 비용처리 금지
- 외국공무원 뇌물공여에 대한 형사처벌 위한 공통기준(common elements) 합의
- 기업회계기준 및 부패방지 내부통제장치 강화
-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기업에 대해 국내 정부조달시 입찰 제한

또한 OECD는 상기 개정권고의 국내이행과 뇌물방지협약 추진에 대하여 1998년 4월 1일까지 OECD 회원국은 OECD 뇌물방지 작업단에서 합의된 형사처벌 기준에 따라 이행입법안을 제출하고, 1998년 12월까지 입법을 완료하도록 합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형사처벌을 위한 국제협약 제정 협상을 개시하여 1997년 12월까지 협약을 제정하고, 1998년 말까지 공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후 1997년 7월과 OECD 본부에서 독일, 프랑스, 미국에서 제출한 3개 협약초안을 근거로 각국의 입장을 정리하는 1차 협상을 개시하고, 제1차 협상시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1997년 10월 각국 입장을 재정리하고 미합의 사항을 집중 토론하는 제2차 협상이 있었다.

1997년 11월 협상안이 최종적으로 타결되고, 1997년 12월 17일 각료급회의에서 33개국²⁾이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OECD 차원의 부패방지협약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이하 ‘OECD 뇌물방지협약’으로 약칭)”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에 서명한 각국은 협약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1998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하였고, 한국의 경우도 1998년 12월 28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법률 제5588호로 제정, 공포하였다.

2) 1997년 12월 17일 협약에 서명한 국가는 호주를 제외한 28개 OECD 회원국 및 5개 옵저버 국가이다. 5개의 옵저버 국가는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칠레, 슬로바키아, 브라질이다.

OECD 뇌물방지협약의 발효조건은 OECD 뇌물방지협약 5조에 따라 회원국 상위 수출국 10개국 중 5개국이 비준하고 동 5개국 수출총액이 상위 10개국 전체 수출액의 60%를 상회할 때, 5개국이 OECD의 비준서 제출 60일 이후에 발효되는 것이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가 비준서를 제출해서 1999년 2월 15일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다. 현재 OECD 뇌물방지협약을 발효한 국가는 38개국이다.

표1. OECD 뇌물방지협약 제정경과 및 주요 내용

과정	주요 내용
1997년 5월 OECD 각료이사회 이전	· 1994. 5. 15 : OECD이사회,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 권고」 채택 (The Recommendation on Bribery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억제하는 최초의 국제합의
	· 1994. 10. 5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nti-Bribery)을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위원회(CIME)산하에 설치
	· 1996. 4. 11 : OECD 이사회,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손금처리에 관한 권고」 채택
	· 1996. 5월 : OECD 각료이사회,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형사처벌 하는데 원칙적 합의
1997년 5월 OECD 각료이사회 결과	· 1997. 5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 94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 권고」를 보다 구체화하여 시행하는 「개정 뇌물방지권고」를 채택 <주요내용> - 외국공무원에 공여된 뇌물의 손금(비용)처리 금지 -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공통기준 (common elements) 합의 - 기업회계기준 및 부패방지 내부통제장치 강화 -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기업에 대해 국내 정부조달시 입찰 제한
	· 상기 개정권고의 국내이행과 뇌물방지협약 추진에 대하여 합의 도출 - 1998. 4. 1까지 각 국은 OECD 뇌물방지작업단에서 기합의된 형사처벌기준에 따라 이행입법안을 제출하고 1998. 12월까지 입법완료(권고) -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정 협상을 즉각 개시하여 1997. 12월까지 협약을 제정하고, 1998년 말까지 발효시키도록 함(결정)
협약 확정과정	· 1997. 7. 7 - 9. 제1차 협약제정 협상회의 개최(OECD 본부) - 28개 OECD 회원국 및 브라질, 불가리아, 아르헨티나, 칠레, 슬로바키아가 비회원국으로 참가
	· 1997. 10. 6 - 10. 제2차 협약제정 협상회의 개최(OECD 본부) - 일부 쟁점사항 외에는 대부분 이슈에 대해 합의도출
	· 1997. 11. 18 - 20. 제3차 회의 개최(OECD 본부), 협약문 및 Commentary 확정
	· 1997. 12. 17. 각료급회의에서 서명 - 동 협약 및 이행법안을 1998. 4. 1까지 의회에 제출키로 하는 각료선언 채택

자료: 한국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data/data_view.php?did=640&page=1&year=&pdv=&writer=조은경&subject=)

OECD 뇌물방지협약 이전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고위관리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는 정상적 영업활동에 따른 비용의 일부분 일뿐이며 범죄라는 인식은 일반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주요 국제거래의 15% 이상이 뇌물비용으로 추산되기도 하였다.

표2. OECD 뇌물방지협약 비준 및 이행입법 발효 현황 (2012년 4월 기준)

국가	비준서 기탁	협약 발효	이행입법 발효
아르헨티나	2001. 2. 8	2001. 4. 9	1999.11.10
호주	1999.10.19	1999.12.18	1999.12.17
오스트리아	1999. 5.20	1999. 7.19	1998.10. 1
벨기에	1999. 7.27	1999. 9.25	1999. 4. 3
브라질	2000. 8.24	2000.10.23	2002. 6.11
불가리아	1998.12.22	1999. 2.15	1999. 1.29
캐나다	1998.12.17	1999. 2.15	1999. 2.14
칠레	2001. 4.18	2001. 6.17	2002.10. 8
체코	2000. 1.21	2000. 3.21	1999. 6. 9
덴마크	2000. 9. 5	2000.11. 4	2000. 5. 1
에스토니아	2004.12.14	2005. 2.12	2004. 7. 1
핀란드	1998.12.10	1999. 2.15	1999. 1. 1
프랑스	2000. 7.31	2000. 9.29	2000. 9.29
독일	1998.11.10	1999. 2.15	1999. 2.15
그리스	1999. 2. 5	1999. 4. 6	1998.12. 1
헝가리	1998.12. 4	1999. 2.15	1999. 3. 1
아이슬란드	1998. 8.17	1999. 2.15	1998.12.30
아일랜드	2003. 9.22	2003.11.21	2001.11.26
이스라엘	2009. 3.11	2009. 5.10	2008. 7.21
이태리	2000.12.15	2001. 2.13	2000.10.26
일본	1998.10.13	1999. 2.15	1999. 2.15
한국	1999. 1. 4	1999. 3. 5	1999. 2.15
룩셈부르크	2001. 3.21	2001. 5.20	2001. 2.11
멕시코	1999. 5.27	1999. 7.26	1999. 5.18
네덜란드	2001. 1.12	2001. 3.13	2001. 2. 1
뉴질랜드	2001. 6.25	2001. 8.24	2001. 5. 3
노르웨이	1998.12.18	1999. 2.16	1999. 1. 1
폴란드	2000. 9. 8	2000.11. 7	2001. 2. 4
포르투갈	2000.11.23	2001. 1.22	2001. 6. 9
러시아	2012. 2.17	2012. 4.17	2011. 5.16
슬로바키아	1999. 9.24	1999.11.23	1999.11. 1
슬로베니아	2001. 9. 6	2001.11. 5	1999. 1.23
남아프리카공화국	2007. 6.19	2007. 8.18	2004. 4.27
스페인	2000. 1. 4	2000. 3. 4	2000. 2. 2
스웨덴	1999. 6. 8	1999. 8. 7	1999. 7. 1
스위스	2000. 5.31	2000. 7.30	2000. 5. 1
터키	2000. 7.26	2000. 9.24	-
영국	1998.12.14	1999. 2.15	2002. 2.14
미국	1998.12. 8	1999. 2.15	1998.11.10

자료: OECD (<http://www.oecd.org/dataoecd/59/13/40272933.pdf>)

OECD 뇌물방지 협약이 각국 국내법에서 규정된 뇌물방지 법률과 차이점은 국내법에서는 뇌물공여와 뇌물수수를 모두 처벌을 받지만, OECD 뇌물방지협약은 뇌물공여 행위만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다. 이는 국가주권의 원칙상 자국의 형사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공무원을 처벌할 수 없는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 사이에서는 OECD 뇌물방지협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국제적인 뇌물공여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간 사법공조가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수뢰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해당 공무원 소속국은 국내뇌물법으로 해당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공무원의 범주는 입법부, 행정 또는 사법상의 임명 또는 선출직 직위를 가진 자와 외국을 위하여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자 및 국제기구 공무원도 포함되었다. 국회의원의 포함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일부 국가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고려하여 OECD 뇌물방지협약의 외국공무원 범주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포함하기로 결정되었고, 반 면 정당에 대한 뇌물은 협약에서 제외되었다.

뇌물의 범주에 대한 규정은 영업을 취득 또는 유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약속하는 금전적 또는 다른 형태의 이익을 모두 포함하였다. 처벌대상은 뇌물을 제공한 자연인 뿐만아니라 법인도 포함되었고 뇌물에 대한 몰수와 추징은 물론 뇌물로 취득한 이익까지 몰수하도록 규정되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의 회원국으로서 한국의 경우도 1998년 12월 28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법률 제5588호로 제정-공포하였다. 1999년 2월 15일 법률이 발효되었다.

반면에 프랑스는 미국, 독일과 같은 국가 뿐만아니라 한국에 비해서도 관련분야의 법률조치에서 늦은 편이었다. 프랑스에서 OECD 뇌물방지협약의 발효를 승인하는 법안이 1999년 5월 25일 채택되었고, OECD 뇌물방지협약 집행을 위한 국내법이 2000년 7월 31일이나 공포되어서, 2000년 9월 29일에 발효되었다.

III. OECD 뇌물 방지협약과 프랑스 정부의 정책

프랑스에서 OECD의 뇌물방지협약의 발효를 인정하는 법안이 1999년 5월 25일 채택되었고, OECD 뇌물방지협약 집행을 위한 국내법이 2000년 7월 31일에 공포되었다.

그리고 관련사항이 2007년 11월 13일 부패방지 법안에 의해 개정되었다. 기존의 뇌물관련 법안과는 별도로 4가지 사항에서 뇌물공여 방지를 규정하였다.

-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공무원에 대한 수동적인 뇌물공여
-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공무원에 대한 능동적인 뇌물공여
- 외국 또는 국제 재판소 사법관에 대한 수동적인 뇌물공여
- 외국 또는 국제 재판소 사법관에 대한 능동적인 뇌물공여

주목할 만한 사항은 관련 문제가 이미 사법분야에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EU이외의 지역에도 관련법이 적용되며, 뇌물공여와 국제상거래의 대가가 서로 연관되어 교환되었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공무원이 연루되어 상거래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위법행위로 규정하였다.

- 국제 공무원(International Public Official)의 수동적인 영향력 행사
- 국제 공무원의 능동적인 영향력 행사
- 국제 사법관의 수동적인 영향력 행사
- 국제 사법관의 능동적인 영향력 행사

2007년 11월에 개정된 프랑스의 부패방지법은 외국 또는 국제 사법절차에서 증인 매수 (435조 12항) 및 외국 또는 국제 사법관에 대한 공갈협박(threats against or intimidation) (435조 13항) 역시 위법사항으로 규정하였다.

위의 사항은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적용이 된다.

2007년 개정된 프랑스의 부패방지법은 지금까지 조직범죄 수사에서나 사용되던 전화도청이나, 특정 장소나 차량에서 음성 및 영상 녹화도 프랑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뇌물공여와 영향력 행사 (bribery and trading in influence)'관련 범죄수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뇌물을 공여한 기업의 노동자가 이를 폭로하여 불이익에 직면하였을 때, 프랑스 노동법 1161조 1항은 좋은 의지를 가지고 고용주나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 한 제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뇌물공여에 관련해서 해외 뇌물공여에 대해서 예전 법률에서 구성요건으로 성립된 사항에 대해서 모호한 점을 해소하려하였다. 2011년 5월 17일 법안을 통해서 능동적인 뇌물공여 및 수동적인 뇌물공여, 외국공무원, 국제기구 공무원, 외국 및 국제 재판소 사법관 관련사항, 그리고 수동적인 영향력 행사, 능동적인 영향력 행사 관련사항에 대해서 개정이 있었다.

프랑스는 반부패관련 법안에서 아래의 조약도 비준하였다.

- UN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2003년 12월 9일 체결, 2005년 7월 11일 비준

- 유럽범죄인인도협약: 1957년 12월 13일 체결, 1986년 2월 10일 비준
- 범죄수익금 돈세탁, 추적, 압류 및 몰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Laundering, Search, Seizure and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from Crime): 1991년 7월 5일 체결, 1997년 2월 25일 비준
- EU 회원국 공무원 또는 EU 공무원이 연루된 부패에 대한 방지 협약(EU Convention o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volving official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r officials of the EU Member States): 1999년 5월 27일 비준
-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UN협약: 2000년 12월 12일 체결, 2002년 10월 29일 비준.

프랑스는 UN반부패 협약의 집행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에 자원하였고,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였다.

IV. 프랑스 뇌물 스캔들 발생현황

프랑스의 부정부패 스캔들은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오늘날에도 국제투명성 지 표조사에서,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는 같은 규모의 경제대국인 독일(14위), 일본(14위), 영국(16위)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전 세계 점령도 순위에서 25위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부정부패는 에서 부정부패는 오래 전부터 큰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1888년에 발생한 파나마 스캔들이다. 1881년 수에즈 운하를 완성한 레썬스가 7년 만에 운하완공을 장담하였지만, 이집트와는 다른 파나마의 복잡한 지형 때문에 운하건설 방식을 변경하여 갑문식 운하를 건설해야 했고, 황열병, 말라리아 등의 풍토병으로 인한 건설작업의 어려움과 자금난이 겹쳐서 1888년 파나마운하회사는 파산하였다. 문제는 이 회사가 도산하기 전 모집한 복권부 사채의 입법화를 추진할 때 유대인 금융자본가를 통하여 프랑스 의회 의원들이 매수된 사실이 1892년 언론에 의해 폭로되어 파문이 확산되었다.

2000년 5월 11일 프랑스 르피가로지는, 1992년에는 프랑스 방위산업체인 톰슨-CSF(Thomson-CSF)그룹이 1992년 대만에 프리깃함 6척을 팔면서 당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의 동의 아래 대만 집권당과 중국 공산당에 총 5억달러(당시 25억프랑)의 커미션을 제공한 것으로 보도했다. 프랑스의 르 피가로지는 “롤랑 뒤마 전 외무장관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사법당국이 찾아낸 공식서류들을 검토한 결과 5억달러 중 4억달러는 대만 집권당에 전달됐고 나머지 1억달러는 프리깃함 판매에 따른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건네졌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2009년 9월 22일 일자 기사 참조)

대만에 프리깃함을 판매하는 것이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 프랑스 외무부는 톰슨의 판매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국영기업 엘프가 롤랑 뒤마 외무장관의 내연녀였던 크리스틴 드비에-종쿠르(Christine Deviers-Joncour)를 로비스트로 고용해 뒤마를 설득했다.

표3, 투명성 지표

순위	국가	CPI 2011 Score	CPI 2010 Score	CPI 2009 Score	CPI 2008 Score
1	뉴질랜드	9.5	9.3	9.4	9.3
2	덴마크	9.4	9.3	9.3	9.3
2	핀란드	9.4	9.2	8.9	9.0
4	스웨덴	9.3	9.2	9.2	9.3
5	싱가포르	9.2	9.3	9.2	9.2
6	노르웨이	9.0	8.6	8.6	7.9
7	네덜란드	8.9	8.8	8.9	8.9
8	스위스	8.8	8.7	9.0	9.0
8	호주	8.8	8.7	8.7	8.7
10	캐나다	8.7	8.9	8.7	8.7
11	룩셈부르크	8.5	8.5	8.2	8.3
12	홍콩	8.4	8.4	8.2	8.1
13	아이슬란드	8.3	8.5	8.7	8.9
14	독일	8.0	7.9	8.0	7.9
14	일본	8.0	7.8	7.7	7.3
16	오스트리아	7.8	7.9	7.9	8.1
16	바베이도스	7.8	7.8	7.4	7.0
16	영국	7.8	7.6	7.7	7.7
19	아일랜드	7.5	8.0	8.0	7.7
19	벨기에	7.5	7.1	7.1	7.3
21	바하마	7.3			
22	카타르	7.2	7.7	7.0	6.5
22	칠레	7.2	7.2	6.7	6.9
24	미국	7.1	7.1	7.5	7.3
25	우르과이	7.0	6.9	6.7	6.9
25	프랑스	7.0	6.8	6.9	6.9
25	세인트 루시아	7.0			
28	아랍에미리트	6.8	6.3	6.5	5.9
29	에스토니아	6.4	6.5	6.6	6.6
30	키프로스	6.3	6.3	6.6	6.4
31	스페인	6.2	6.1	6.1	6.5
32	포르투갈	6.1	6.0	5.8	6.1
32	보츠와나	6.1	5.8	5.6	5.8
32	대만	6.1	5.8	5.6	5.7
35	슬로베니아	5.9	6.4	6.6	6.7
36	이스라엘	5.8	6.1	6.1	6.0
36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5.8			
38	부탄	5.7	5.7	5.0	5.2
39	푸에르토리코	5.6	5.8	5.8	5.8
39	몰타	5.6	5.6	5.2	5.8
41	폴란드	5.5	5.3	5.0	4.6
41	케이프베르데	5.5	5.1	5.1	5.1
43	대한민국	5.4	5.4	5.5	5.6
44	부르나이	5.2	5.5	5.5	0
44	도미니카	5.2	5.2	5.9	6.0
46	모리시어스	5.1	5.4	5.4	5.5
46	마카오	5.1	5.0	5.3	5.4
46	바레인	5.1	4.9	5.1	5.4

자료: Guardian지

(<http://www.guardian.co.uk/news/datablog/2011/dec/01/corruption-index-2011-transparency-international/data>)

결국 경제예산부, 총리실, 프랑스대통령궁의 승인을 받아 톰슨은 대만측과 프리깃함 판매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2000년 3월 14일 대만 국방부차관은 프랑스에 공식적으로 톰슨의 대만정부에 대한 커미션 제공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대만조사위원단의 프랑스 방문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2000년 3월 1일 본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롤랑 뒤마는 헌법재판소장직에서 사임하였고, 프랑스 검찰은 롤랑 뒤마에게 징역 2년에 2백50만프랑의 벌금을 구형하였다. 롤랑 뒤마는 항소해서 2심에서 무죄방면되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톰슨-CSF(Thomson-CSF)이 프리깃함을 대만에 팔면서 뇌물 스캔들이 발생했던 해인 1992년 4월에 프랑스 총리에 취임한 피에르 베레고브와 (Pierre Eugène Bérégovoy)가 부패근절을 위한 정부기구를 설립하고자 했고, 정치자금과 각종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1993년 1월 29일 부패방지 및 경제활동과 공적 절차의 투명화에 관한 법률(loi 93-122 du 29 janvier 1993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 la corruption et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économique et des procédures publiques)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을 근거로 법무부 장관 산하에 부패방지처 (Service Central de la Prévention de la Corruption)를 신설하였고, 공직윤리위원회 (Commission de déontologie)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부패근절을 위해 노력했던 피에르 베레고브와 자신이 1993년 100만 프랑을 이자없이 대출받은 것이 뇌물스캔들로 비화되어 1993년 2월 총리직에서 사임하였고, 1993년 5월 1일 권총자살하였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연루된 부패스캔들도 있었다. 시라크 전 대통령은 파리시장 재직 시절인 1990~1995년 현재 프랑스 최대 우파정당인 대중운동연합(UMP: 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의 전신인 공화국연합(RPR: Rassemblement pour la République)의 당원들을 파리시 공무원으로 위장취업시켜서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대통령 재임 중에 기소됐다. 프랑스 검찰은 시라크가 시장 재임시절 19건의 위장취업을 성사시킨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시라크는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5~2007년 대통령으로서 면책특권 덕분에 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았지만 퇴임과 함께 면책특권을 박탈당하면서 2010년 3월 7일 처음 법정에 섰다.

파리 형사법원은 2011년 12월 15일 공금횡령 혐의로 기소된 시라크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시라크는 공공 기금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신뢰의 의무를 위반해 파리 시민의 세금 140만유로를 유용했다"며 유죄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시라크가 고령인 점과 전직 국가수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표4. 부패원인의 분석모형

원인의 분석	원인의 특징
맥락적 분석 (contextual analysis)	-기능주의적 시각에 의한 발전의 종속변수로서 부패를 필요악(necessary evil)으로 파악
구조적 분석 (structural analysis)	-공직자들의 권위주의적 가치관과 행정행태에 의한 부패
권력문화적 분석 (power cultural analysis)	-공직의 사유권과 권력남용에 의한 부패유발
거시적 분석 (macro analysis)	-행정제도의 결함과 미비, 행정통제의 부적합성으로 인한 부패원인
군사문화적 분석 (military cultural analysis)	-정치문화의 미성숙과 군사문화의 구조화로 인한 권위 주위와 수직적 지배문화에 의한 부패유발
시민문화의 환경적 분석 (civil cultural analysis)	-건전한 시민문화의 결핍과 도덕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시민들이 부패유인자요 공급자라는 측면에서 부패유발
정치경제학적 정경유착분석 (political economic analysis)	-성장이데올로기의 합리화에 근거한 경제엘리트들간의 야합 그리고 이권개입에 의한 공직자의 부패유발

자료: 김영중(1996), p.44 (윤광재(2010), p.191재인용)

프랑스는 OECD 뇌물방지협약의 회원국으로서 관련입법조치를 완료하였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른 선진국과 부패방지에 대한 노력을 1990년대 초부터 꾸준히 기울여오고 있다. 그렇지만 프랑스 기업과 정치인에 관련된 뇌물스캔들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

2012년 5월 퇴임한 프랑스의 전임 대통령인 니콜라 사르코지 역시, 그의 전임 대통령이었던 자크시라크처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과 관련해 조사받을 전망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화장품 기업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언 베탕쿠르에게 불법 선거자금 80만유로와,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로부터 대선자금 5000만유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사르코지는 정치자금 스캔들인 ‘카라치 게이트’에도 연루돼 있다. ‘카라치 게이트’는 니콜라 바지르 전 루이뷔통 임원과 티에리 고베르 전 사르코지 측 홍보자문관이 1990년대 무기 거래로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에두아르 발라두르에 제공한 사건이다. 당시 사르코지는 발라두르의 선거 홍보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카라치 게이트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앙일보 2012년 6월 19일 기사참조³⁾)

프랑스 기업들은 OECD 뇌물방지협약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기업들은 해외에서 이권획득을 위해서 뇌물 공여를 주저하지 않았다.

3)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513304&ctg=1300
(2012년 4월 15일 검색)

동서독 통합을 서두르던 서독의 콜 총리가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동독 산업설비 중 일부를 프랑스 기업 엘프(Elf)에 헐값으로 넘길 때, 커미션을 수수하였다. 이는 2001년 프랑스 검찰에 포착되어 엘프 중역이 체포되고, 콜 정부가 이 거래와 관련된 비밀문서를 폐기 처분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프랑스 국영기업인 엘프는 이전에도 아프리카 자원확보를 위해 프랑스 정부의 아프리카 자문단이나 비밀 정보부와 공동보조를 취하였다.⁴⁾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 현지 집권 세력과 뇌물 거래가 뿌리를 내렸다. 예를 들어, 엘프는 자체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 은행도 세웠는데, 이 중 절반을 차지하는 개인 지분 중 35%를 가봉 대통령 봉고가 소유하고 있었다. 이는 엘프와 아프리카 현지 권력과의 유착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유럽의회 의원 몇몇은 엘프의 위탁을 받아 앙골라 반군(UNITA)과 협상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앙골라 반군은 1997년에 전체 국토의 70%를 장악했었는데, 이 상하게도 앙골라 반군은 유엔의 제재 조치를 받으면서도, 무기는 자유롭게 수입했다. 그 대가로 앙골라의 석유 자원 개발권은 현재 프랑스 엘프와 영·미계 업체가 각각 45%씩 나누어 갖고 있다.

1997년 콩고 대통령선거에서 프랑스의 지원을 받은 구에소 대통령이 당선되고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리소바가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석유 개발권은 프랑스로 넘어갔다. 그 리소바는 프랑스로 망명해서 구에소 대통령 진영이 앙골라에서 유입된 불법무기로 무장을 했으며, 엘프가 앙골라에서 불법무기를 수송을 담당했다고 프랑스 법원에 엘프를 고소하면서 엘프가 앙골라 반군과 연루된 무기 스캔들이 드러났다.

또 프랑스의 석유기업 역시 뇌물관련 스캔들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07년 3월 30일 AFP통신은 프랑스의 대표적 석유기업 '토탈'의 최고경영자 크리스토프 드 마제리가 이란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보도했다. 드 마제리가 이란 가스전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 라프산자니 전 이란 대통령의 아들 비서에게 스위스 비밀 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프랑스 경찰에서 확보했으며, 수사를 통해서 스위스 은행계좌에서 1억 스위스 프랑이 이란 측에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토탈이 1997년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개발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도 이란 정부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었다. 결국 토탈은 1997년 이란 국영회사 NIOC와 가스전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프랑스 기업이 연루된 뇌물스캔들에서 한국 관련된 사례가 있었다. 한국에 고속 전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불법로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로비스트 최만석이 불법 로비자금으로 1100만 달러 가량을 알스톰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최만석은 한국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2006년 2월 미국에서 체

4) <http://www.sisapress.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0721>
(2012년 4월 15일 검색)

포되었고, 이에 최만석은 미국 법원에 한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해 달라는 소송을 벌였으나, 2009년 2월 범죄인인도가 합당하다는 미국 항소원법 판결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만석의 폐암 투병으로 인해 송환이 일시 보류되고 있었던 중 최만석이 폐암으로 사망하여 알스톰의 한국에서의 뇌물 스캔들은 수사가 되지 못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뇌물스캔들을 일으켰던 알스톰사는 2008년 스위스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스위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알스톰은 라트비아, 튀니지,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 뇌물을 제공했고, 이들 국가에서 알스톰이 고용한 컨설턴트 성공보수의 상당부분이 해당 국가 공무원들에게 뇌물도 전달되었음을 밝혀내었다. 스위스 법원은 알스톰의 스위스 법인인 Alstom Network Schweiz AG에게 3,85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표5. OECD뇌물방지협약 회원국에서의 해외뇌물 사건 법집행 현황

국가	2010년 까지의 법집행	중요 해외뇌물 사건	대형뇌물 사건이 적발된 마지막 해	형사처벌		무죄방면		세계 수출 점유율 (2010, %)
				개인	회사	개인	법인	
강력한 법집행(Active Enforcement)								
덴마크	14b	>3	2008	0	0	0	0	0.8
독일	135	>16	2010	34(4)	7	0	0	8.2
이탈리아	18	10	2009	21	18	1	0	2.9
노르웨이	6	3	2008	5	1	2	0	0.9
스위스	>35	>3	2010	3	0	0	0	1.6
영국	17c	17c	2011c	8	7	0	0	3.5
미국	227	>39	2011c	40(48)	48(27)	0	0	9.8
온건한 법집행(Moderate Enforcement)								
아르헨티나	2	2	2009	0	0	0	0	0.4
벨기에	4	1	2006	0b	0b	0	0	2.0
핀란드	6	2	2010	0	0	0	0	0.5
프랑스	24	6d	2010	3c	0	2	0	3.5
일본	7	1	2007	6	1(1)	0	0	4.5
대한민국	17	1	2007/ 2008	13	3	0	0	2.9
네덜란드	8	8	2007	0	0	1	0	3.3
스페인	11	2	2008	0	0	0	0	2.0
스웨덴	2	1	2009	1	0	0	0	1.2
미비한 법집행(Little or No Enforcement)								
호주	1b	1	2008	0	0	0	0	1.4
오스트리아	0	0	-	0	0	0	0	1.1
브라질	1	0	-	0	0	0	0	1.3

불가리아	4	0	-	0	0	0	0	0.1
캐나다	2	0	-	0	1	0	0	2.5
칠레	2	0d	-	0	0	0	0	0.4
체코	0	0	-	-	-	1	0	0.8
에스토니아	0	0	-	-	-	0	0	0.1
그리스	0	0	-	-	-	0	0	0.3
헝가리	27	0	-	25	0	2	0	0.6
아일랜드	0	0	-	0	0	0	0	1.1
이스라엘	0	0	-	-	-	0	0	0.4
룩셈부르크	2	0d	-	-	-	0	0	0.5
멕시코	0	0	-	-	-	0	0	1.7
뉴질랜드	1	0d	-	0	0	0	0	0.2
폴란드	0	0	-	-	-	0	0	1.0
포르투갈	4	0	-	6	0	1	0	0.4
슬로바키아	0	0	-	-	-	0	0	0.4
슬로베니아	0	0	-	-	-	0	0	0.2
남아프리카공화국	0	0	-	-	-	0	0	0.5
터키	0	0	-	-	-	0	0	0.9

- a.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2010 연례보고서에 인용된 수치
 - b. UN Oil-for-Food Programme의 뇌물스캔들에 연루된 사건.
 - c. 2011 현황포함
 - d. 수치가 불명확하거나 언론보도에 근거한 수치
-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1: 8)

표6. 해외뇌물사건 현황

국가	2010년까지 발생한 부패 사건	중요 부패 사건	중요 부패사건이 발생한 마지막 해	2010년까지 형사(민사)집행		무죄방면		세계 수출 점유율 (2010, %)
				개인	기업	개인	법인	
강력한 법집행(Active Enforcement)								
덴마크	14b	>3	2008	0	0	0	0	0.8
독일	135	>16	2010	34(4)	7	0	0	8.2
이탈리아	18	10	2009	21	18	1	0	2.9
노르웨이	6	3	2008	5	1	2	0	0.9
스위스	>35	>3	2010	3	0	0	0	1.6
영국	17c	17c	2011c	8	7	0	0	3.5
미국	227	>39	2011c	40(48)	48(27)	0	0	9.8
온건한 법집행(Moderate Enforcement)								
아르헨티나	2	2	2009	0	0	0	0	0.4
벨기에	4	1	2006	0b	0b	0	0	2.0
핀란드	6	2	2010	0	0	0	0	0.5
프랑스	24	6d	2010	3c	0	2	0	3.5
일본	7	1	2007	6	1(1)	0	0	4.5
대한민국	17	1	2007/2008	13	3	0	0	2.9
네덜란드	8	8	2007	0	0	1	0	3.3
스페인	11	2	2008	0	0	0	0	2.0

스웨덴	2	1	2009	1	0	0	0	1.2
미비한 법집행(Little or No Enforcement)								
호주	1b	1	2008	0	0	0	0	1.4
오스트리아	0	0	-	0	0	0	0	1.1
브라질	1	0	-	0	0	0	0	1.3
불가리아	4	0	-	0	0	0	0	0.1
캐나다	2	0	-	0	1	0	0	2.5
칠레	2	0d	-	0	0	0	0	0.4
체코	0	0	-	-	-	1	0	0.8
에스토니아	0	0	-	-	-	0	0	0.1
그리스	0	0	-	-	-	0	0	0.3
헝가리	27	0	-	25	0	2	0	0.6
아일랜드	0	0	-	0	0	0	0	1.1
이스라엘	0	0	-	-	-	0	0	0.4
룩셈부르크	2	0IV	-	-	-	0	0	0.5
멕시코	0	0	-	-	-	0	0	1.7
뉴질랜드	1	0IV	-	0	0	0	0	0.2
폴란드	0	0	-	-	-	0	0	1.0
포르투갈	4	0	-	6	0	1	0	0.4
슬로바키아	0	0	-	-	-	0	0	0.4
슬로베니아	0	0	-	-	-	0	0	0.2
남아프리카공화국	0	0	-	-	-	0	0	0.5
터키	0	0	-	-	-	0	0	0.9

- a. OECD 뇌물방지 작업반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2010년 연례보고서의 통계
 - b. 모든 사건이 UN Oil-for-Food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건. 몇몇 사건은 국제협약상의 제재를 받았는데, 호주에서 이는 민사사건에 의해 진행 This was a civil settlement in Australia
 - c. 2011년 사건 포함
 - d. 통계미비 혹은 언론매체 보고서에 근거한 수치
-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1: 9)

스위스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2008년에 알스툼의 뇌물공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는 알스툼이 외국에서 사업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총 2억 달러 이상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표5에서처럼, Transparency International 자료를 보면 프랑스에서 뇌물방지에 관련된 법집행은 다른 선진경제대국에 비해서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끊임없이 프랑스 기업이 연루된 뇌물스캔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집행은 미국, 독일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프랑스의 부패관련 법률체계가 비교적 잘 정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Transparency International은 해외에서 일어난 부패범죄에 대해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제한적이라면서 그 이유 중 하나를 제

시하고 있다.(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1: 35))

프랑스법은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인 또는 피해자가 반드시 프랑스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형법 113조 6항과 113조 7항에 따르면, 프랑스법은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행위에 대해서, 그 범죄행위가 해당국에서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그 피해자가 프랑스인일 때 적용될 수 있다. 프랑스 검사는 피해자의 고소 또는 해당국가의 공식적인 항의가 발생할 때 기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해외뇌물사건은 프랑스법원에서 주로 경미한 범죄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았다.

V. 결론

프랑스는 OECD 뇌물방지협약의 회원국으로서 뇌물방지협약의 비준과 국내입법 절차에 대해서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였다.

그러나 청렴도 수준에서 다른 경제대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문제가 뒤떨어지고 있다. 이는 프랑스 기업이 연루된 해외 뇌물스캔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을 통해서 잘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프랑스의 뇌물관련 부패가 제도의 미비라기보다는 그랑제콜 (Grandes Ecoles) 중심의 프랑스 엘리트의 폐쇄성에 따라서 프랑스 정치 및 경제 지도층에 대한 상호감시 기능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내부에서 그리고 프랑스 기업과 관련된 뇌물공여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법률제도 정비보다는 프랑스의 정치 및 경제, 사법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지만, 법률제도 정비에 비해서 정치, 경제, 사법 거버넌스를 변화시키는 것은 보다 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인 만큼 당분간 프랑스 기업에 관련된 뇌물공여 문제는 다른 경제대국에 비해서 우려가 되는 수준으로 지속될 것이라 예상되는 바이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는 부패가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제도의 변화보다는 그 제도의 틀 안에서 활동하는 행위자의 행동 및 정치, 경제, 사법 거버넌스가 변화하기까지는 훨씬 더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안 도입을 통한 제도 확립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행동양식 및 사회가 작동하는 거버넌스가 부패방지를 위해 작동할 수 있는 각종 방안에 대한 사례적용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시홍. (2010).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위기와 이탈리아 정치변동. 「유럽연구」, 28(3): 109-132.
- 김신규. (2011). 문화와 엘리트 연속성을 통해 살펴본 중동부유럽의 부패. 「동유럽연구」, 28(1): 133-158.
- 김영중. (1996). 「부패학」. 서울: 송실대출판부.
- 김용훈. (2011). 유럽연합의 통합 동력으로서의 법치주의. 「유럽헌법연구」, 10: 101-161.
- 김종법. (2004). 하부정치문화요소를 통해 본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38(5): 417-437.
- 신현기. (2004). 국가경찰공무원의 부패원인과 방지에 관한 연구. 「한국유럽행정학회보」, 1(1): 212-234.
- 이상수. (2006). 거버넌스 시대의 정부신뢰체계 구축과 부패방지 연구. 「한국유럽행정학회보」, 3(1): 58-83.
- 임성호. (2004). 비즈니스정보- 중동부 유럽 3국의 21세기 비즈니스 환경: 폴란드에서의 기업활동과 부패. 「국제지역정보」, 133: 99-101.
- 임종현. (2009). 국제 반부패 논의와 유럽연합과 독일의 대응. 「한독사회과학논총」, 19(4): 83-108.
- 전학선. (2008). 프랑스의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의 기준. 「공법학연구」, 9(3): 99-118.
- Heilbrunn, J. R. (2005). Oil and Water? Elite Politicians and Corruption in France. *Comparative politics*. 37(3): 277-296.
- Meny, Y. (1997). La corruption en France: un changement de perception", *CAHIERS FRANCAIS(LA DOCUMENTATION FRANCAISE)*. 281: 50-51.
- Rossetti, C. (2000). The Prosecution of Political Corruption: France, Italy and the USA-A Comparative View. *INNOVATION -VIENNA AND ABINGDON-*, 13 (2): 169-182.
- Ruggiero, V. (1996). France: Corruption as Resentment. *Journal of law and society*. 23(1): 113-131.
-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1). *Progress Report 2011*. Berlin: Transparency International International Secretariat.

투고일자 : 2012. 08. 13

수정일자 : 2012. 09. 10

게재일자 : 2012. 09. 21

국문초록

OECD 뇌물방지협약과 프랑스 정책

안상욱(부경대)

1997년 12월 17일, OECD 28개 회원국과 4개의 옵저버국가(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칠레, 슬로바키아, 브라질)은 국제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의 뇌물수수를 금지하는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을 체결하고, 협약이행을 위한 법적절차를 도입하는데 합의하였다.

1999년 5월 25일, OECD 뇌물방지협약을 인정한 프랑스 국내법이 채택되었다. 2000년 7월 31일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절차가 프랑스에서 공포되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의 회원국으로 프랑스는 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적 절차를 도입하면서 협약체결국으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프랑스의 거버넌스는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 프랑스 기업이 연루된 각종 뇌물사건을 들 수 있다. 프랑스의 거버넌스 투명성 문제의 근원은 반-부패관련 법적조치가 프랑스에서 잘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프랑스의 엘리트층의 거버넌스가 폐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정예의 폐쇄적인 그랑제콜 시스템에 근거한 프랑스 엘리트층은 엘리트층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패문제를 감독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반부패 환경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프랑스 정치, 경제, 사회 거버넌스의 개선이 반-부패 관련 법률제도 도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OECD, 뇌물방지협약, 프랑스, 반부패, 부패문화